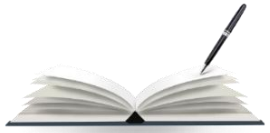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제도 안내

2027년 1월 1일 시행



Contents >

1 추진배경

2 자격검정 개편

3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4 현장실습 운영기준

5 양성기관 안내

6 현장실습생 안내

7 실습기관 안내

8 시스템 안내



이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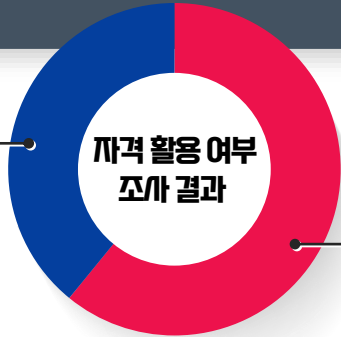


실무역량

자격의 현장 활용성 및 실무역량 향상 필요

— 높은 자격 미 활용률 (전체의 60.9%)

활용
39.1%
(1,21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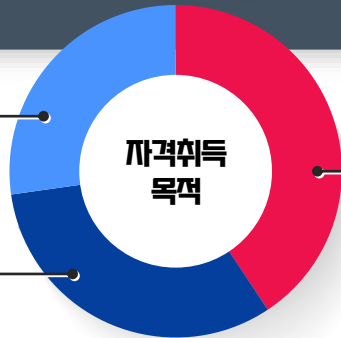


미활용
60.9%
(1,896명)

— 실무·취업 목적의 취득 경향 뚜렷 (전체의 51.4%)

업무 활용
14.0%

담당업무 필요
16.5%



취업 자격조건
20.9%

실제 업무로 직결될 수 있도록 **'실무역량 중심'**의 체계 필요

현장요구

자격체계 개편 및 현장실습 제도화

— 실무중심 자격체계 개편 및 현장실습 제도화

현장 종사자의 **77.7%** 요구

77.7%

현장 전문가 134명 중 104명

— 현장실습 의무화 요구

현장 종사자의 **32.9%** 지지

32.9%

선행연구 134명 중 약 44명

실무 중심 자격체계 개편 및 **현장실습 의무화** 요구

01



실무역량 중심 자격체계로의 전환 필요

이론 중심 교육에서 탈피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요구

출처 법제처-「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02



자격제도 효율화 및 형평성 제고 필요

학력에 따른
응시자격 차별(2.3급)을 개선하여
자격제도의 효율성 제고

출처 법제처-「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3



학력+현장경험을 겸비한 인재 양성

청소년지도사가
실제 청소년기관에서 실무를 경험하며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

출처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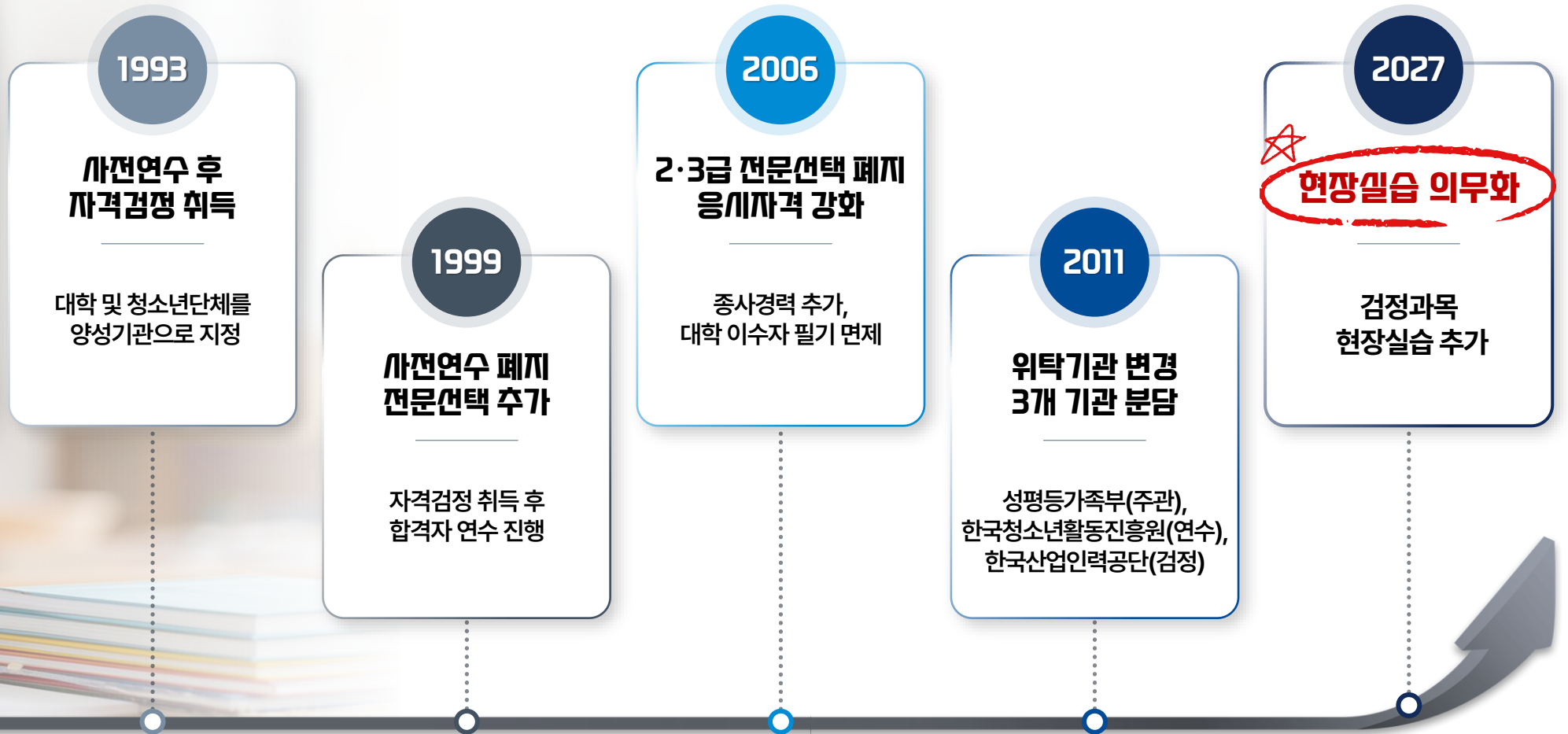
02

사격검정 개편



01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변화

청소년 지도사 History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자격검정 과목 도입에 따른 운영 방안 연구)

시행령 개정
2023. 12.

고시 제정
2025. 08.

고시 개정
2025. 10.

★
전면 시행
2027. 01. 01.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9조 개정

현장실습 운영 규정 제정
(고시)

운영 규정 일부개정
(세부 보완)

제도 전면 시행

자격체계 정비 및
현장실습 근거 마련

실습 세부 규정 확립

일부 규제 완화

현장실습 의무화

약 **3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체계적인 현장실습 제도 도입 완료

자격등급
검정방법
응시자격

현행 >>>>>>>

법 시행령·시행규칙 (~'26.12.31)

1, 2, 3급

필기시험(주관식·객관식)

양성과정

대학 졸업(예정)자
(동등수준 학력)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예정)자

➔ 2급 검정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

'05.12.31 이전 졸업자
(대학 및 동등수준 학력 취득자, 대학원)

➔ 별표1의2에 따른 과목 이수. 다만, 대학원의 경우 필수과목에 한정

승급과정(3급 → 2급)

대상 학력에 따라 응시자격 경력요건 차등

- 대졸(경력 2년)
- 3급 취득(경력 2년)
- 전문대졸(경력 3년)
- 고졸(경력 8년)

개정

법 시행령·시행규칙 ('27.1.1. 시행)

3급 폐지

1, 2급

필기시험(객관식)

양성과정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동등수준 학력)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자

➔ 2급 **검정과목**을 모두 이수

'05.12.31 이전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동등수준 학력)
또는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자**

➔ 별표1의2에 따른 구분별 과목 이수 + 별표2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이수



현장실습 추가

승급과정(3급 → 2급)

대상 '27.1.1. 제도 시행 전 3급 취득자

➔ "3급 취득 후 **종사경력 2년** 또는 **현장실습 이수**" 중 **어느 하나**의 요건 충족

현행

법 시행령·시행규칙 (~'26.12.31)

8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복지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청소년문화	청소년문제와 보호

2급
검정과목

2급
검정방법



필기시험



면접시험



서류심사

개정

법 시행령·시행규칙 ('27.1.1. 시행)

9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복지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청소년문화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추가**



과목별 이수학점 :
대학 3학점
대학원 2학점 이상



서류심사

03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01 주체별 주요역할





04

현장실습 운영기준



현장실습 교육내용

제 2 조

01

전문 지식



청소년 활동·지도 이해

02

지도 개발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운영·관리

03

운영 경험

청소년기관 이해

청소년활동 직·간접 경험

청소년지도사로서 윤리적 실천·가치 이해

현장실습 수업편성

제 2 조

01

실습 OT

1회 이상

02

현장실습

130시간 이상, 최소 15일 이상

03

실습세미나

일주일 1회 이하, 1회당 2시간 이상, 총 5회 이상

04

실습평가회

1회 이상

실습담당교수의 요건

제 4 조

01

학계 전문가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 담당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 교육경험
5년 이상인자

대학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3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의 교육경험을 가진 것으로 인정

02

현장 전문가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중
청소년시설·단체·기관 청소년육성 업무
5년 이상 현장경험 있는 1급 청소년지도사

현장실습 선수과목

제 5 조

기본 과목 : **3과목**

- 청소년 활동
- 청소년 지도 방법론
-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추가 과목 : **1과목**

교과목 명 '**청소년**' 포함 1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심리 및 상담
- 청소년문화
- 청소년복지
- 청소년문제와 보호 등



현장실습생의 권리와 의무

제 11 조

01

실습생의 권리

- ✓ 실습 지도 받을 권리
- ✓ 고의/중대 과실 제외, 불이익 받지 않을 권리
- ✓ 운영 기준·계획과 다른 사항 시 조치 받을 권리

02

실습생의 의무

- ✓ 고시·학교 실습 규정 절차·기준 준수
- ✓ 기관 안전관리규정 기준 준수
- ✓ 기관 기밀사항 누설 금지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호

제 12 조

01

교육의 실시

- ✓ 양성기관 or 실습기관의 '안전·성희롱,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02

평가 불이익

- ✓ 기관 자체 기준·규정으로 평가·징계·불이익 금지

03

실습 운영

- ✓ 고시의 인정 범위 외 업무/지시·강요 시
- ✓ 시간·기간 등 기준 위반 시
- ✓ 산업안전·보건, 위생·성희롱·재해 발생 시
- ✓ 그 밖 운영조건 변경, 조정발생 경우 시

실습기관 자격요건

제 6 조

01

청소년 관련
법률

-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단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 ✓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방청소년활동센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교류센터
- ✓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주배경청소년센터
-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재활센터
- ✓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02

청소년 외
법률

-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 ✓ **초·중등교육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
- ✓ **아동복지법**: 자립지원전담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시설
- ✓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 협동조합

03

기타

- ✓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설치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안전수련원, 해양수련원, 학생문화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 그 밖에 현장실습 교육 및 지도가 가능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실습기관의 운영 기준

제 7 조, 9 조

01

시간 운영

- ✓ 최소 15일 총 130시간 이상
- ✓ 실습지도자 근로시간 내 실시
- ✓ 일 최소 4시간 최대 8시간 이하
- ✓ 주 40시간 초과 금지
- ✓ 1일 1시간 이상 휴게시간, 휴일 보장
- ✓ 22시 ~ 6시까지 야간 불가
* 단 실습생 협의 후 야간 가능

02

인원 배치

- ✓ 자격 갖춘 실습지도자 1명 이상 상근
- ✓ 지도자 당 실습생 10명 이하 운영

03

실습비

- ✓ 양성기관 or 실습생에게 실습비 징수 가능

현장실습지도자 자격기준

제 8 조

01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 소지자

1급



02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
현장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급



05

양생기관 안내





01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 ✓ 현장실습 과목 운영현황 진단
- ✓ 현장실습 과목 교육과정 편성(선수과목 고려)
- ✓ 학생 현장실습 수요조사 실시 및 분석
- ✓ 현장실습 전담교수 배정

02 실습기관 모집 및 협약체결

- ✓ 실습기관 수요조사 실시 등 정보수집
- ✓ 실습기관 모집계획서 작성
- ✓ 실습기관 실습협조 요청 공문 발송
- ✓ 실습 가능기관 협약 체결(실습생 연계 후 체결 가능)

03 실습기관 정보제공

- ✓ 실습 가능기관 리스트 정리
- ✓ 실습 가능기관 접촉 실습담당자 확인
- ✓ 학교홈페이지, 게시판 등 실습기관 정보 제공

04 실습생 수강 신청

- ✓ 현장실습 과목 수강 신청 안내

05 실습기관 및 실습생 연계

- ✓ 학생 학교 제공 실습기관 접촉
- ✓ 학생 본인 검색 실습기관 접촉
- ✓ 실습가능기관 방문 실습 진행 협의

06 실습기관 확정

- ✓ 학생 실습계획서 등 제출 서류 작성
- ✓ 실습가능기관 방문 서류 제출 및 실습 운영 협의
- ✓ 실습계약서 작성



01

실습오리엔테이션 (1회 이상)

- ✓ 현장실습 과목 수업 안내
- ✓ 실습기관 및 실습 운영 소개
- ✓ 현장실습 준비 및 유의 사항 점검



02

실습세미나 (5회 이상)

- ✓ 현장실습 이론수업
- ✓ 실습계획서, 기관분석보고서 등 발표 및 토론



03

실습기관 정보제공

- ✓ 실습생 지도
- ✓ 실습기관 확인 및 실습지도자 면담 등



01

현장실습 평가회 (1회 이상)

- ✓ 현장실습 소감 발표
- ✓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발표 및 제출



02

평가 및 학점(3학점) 부여

- ✓ 실습지도자 평가서 요청 및 회수
- ✓ 실습담당 교수 평가 및 학점 부여

01 양생기관의 운영 절차 (4/4)

• 협약체결 필수

- ✓ 실습기관 협약체결 시, 실습기간, 장소, 평가, 보건·위생·안전 포함
- ✓ 실습 OT 활용하여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하여야 함 (양생기관 또는 실습기관)



기간



장소



실습생
평가



보건·위생·안전

• 교과과정 운영

- ✓ 청소년 활동과 지도에 대한 이해
- ✓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운영, 관리의 실제
- ✓ 청소년기관·사업에 대한 이해 및 경험
- ✓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



실습 오리엔테이션
1회 이상



실습세미나
5회 이상, 대면 1회 필수



최종평가회
1회 이상

• 운영기관 통보

- ✓ 실습기관과 현장실습에 대하여 체결한 협약 사항
- ✓ 실습비에 관한 사항



양생기관

통보



양생기관 [대학] Check!



협약체결

실습 시작 전 또는 시작일까지
실습기관과 협약 완료?



보험가입

기관 실습 중 사고 발생 대비
상해 보험 가입 완료?



교육편성

OT(1회), 세미나(5회),
최종 평가회(1회) 수업 편성?



지도교수

담당 교수 자격 요건 충족,
기관 방문 계획 수립?



Q1 현장실습 운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A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조에 따르면, **양성기관(대학 등)**등이 전체 행정총괄 및 실습의뢰서 발급 등 행정업무를 담당합니다. 즉, 대학은 실습기관과의 협약 체결·실습요청·행정관리를 맡고, 실습담당교수는 교과과정 운영 및 평가를 총괄합니다.

Q2 현장실습 평가는 누가 어떻게 진행하나요?

A 평가권자는 **실습담당교수**입니다. 단,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교수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성적을 부여합니다. (제2조 제5항)

Q3 실습기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대학은 협약 체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실습지도자의 전문성

실습환경의 안전성

이는 학생 보호와 실습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준입니다.

Q4 실습기관이 실습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제10조에 따라 실습기관은 실습지도나 관리 목적의 실습비를 학생 또는 대학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단, 금액·지급방법에 대해서 대학은 성평등가족부 지정 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Q5 현장실습 대상 학년이나 학기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A 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학의 학칙 및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3~4학년 또는 해당 전공 교과목 선 이수자를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Q6 실습 운영 세부사항은 어디에 명시해야 하나요?

A 제2조 제6항에 따라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 실습시간 인정 기준, 보고서 양식, 세미나 운영 지침 등)

06

현장실습생 안내



01 학생의 참여 절차(안) (1/4)



01 현장실습 정보 확인

- ✓ 현장실습 과목 운영현황 진단
- ✓ 현장실습 과목 교육과정 편성(선수과목 고려)
- ✓ 학생 현장실습 수요조사 실시 및 분석
- ✓ 현장실습 전담교수 배정

02 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

- ✓ 현장실습 과목에 대한 수강 신청

03 실습기관 실습요청

- ✓ 학교 제공 실습 가능기관 중 실습 요청
- ✓ 기타 거주지나 학교 주변의 실습기관 직접 탐색

04 선발 여부 확인

- ✓ 실습기관 선발 절차 진행 시 참여
- ✓ 실습기관 방문 실습계획서 등 서류 제출
- ✓ 실습 요청 기관 선발 여부 확인, 학교 통보
- ✓ 실습기관과 실습계약서 작성



01

실습오리엔테이션 참여

- ✓ 현장실습 과목 수업 내용 파악
- ✓ 실습기관 및 실습 운영 방식 파악
- ✓ 실습과정에서의 권리와 의무, 보호조치 등 확인
- ✓ 현장실습 준비 및 유의사항 점검

02

실습세미나 참여

- ✓ 현장실습 이론수업 준비 및 수업 청취
- ✓ 실습계획서 발표 준비 및 발표, 토론
- ✓ 기관분석보고서 발표 준비 및 발표, 토론

03

현장실습 참여

- ✓ 130시간 및 15일 이상 등 운영 기준 숙지
- ✓ 실습기관 실습 운영 숙지 및 실습기관 방문
- ✓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 및 실습일지 작성

01 학생의 참여 절차(안) (3/4)



01

현장실습 평가회 참여

- ✓ 현장실습 참여 소감 정리
- ✓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작성
- ✓ 현장실습 소감 및 결과보고서 발표 및 토론
- ✓ 현장실습 자기평가 진행



02

평가 및 학점(3학점) 부여

- ✓ 성적 처리 관련 서류 제출
- ✓ 실습일지, 실습 과제 등 평가 자료 제출
- ✓ 평가 결과 확인

01 학생의 참여 절차(안) (4/4)

• 선수과목 이수

- ✓ 수강신청 전, 선수과목(총 4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구분	선수과목 (총 4과목)
기본 과목 (3과목)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추가 과목 (1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등 교과목 이름에 '청소년'이 포함된 1과목

• 권리의무와 보호

- ✓ 부당한 업무 지시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양성기관(학교)에 알리고 보호 요청을 할 수 있음



• 실습참여 및 평가

- ✓ 출석 및 시간준수
- ✓ 실습태도와 책임감
- ✓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확인(양성기관)



시간준수



실습태도



서류확인

실습생 [학생] Check!



선수과목

기본과목(3과목), 추가과목(1과목) 이수 완료?



서류확인

개인실습 목표 수립 및 소속대학 학칙 준수?
(실습일지, 보고서, 실습확인서 등)



사전교육

안전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이수 완료?



기본자세

출석 및 시간 준수,
기관/개인정보 비밀 유지



Q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이란 무엇인가요?

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은 대학에서 배우는 이론을 실제 청소년기관 (예: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유스호스텔 등)에서 직접 적용해보는 교육과정이에요. 청소년지도사로서 필요한 실무 역량과 윤리, 현장 경험을 쌓는 필수 교과목입니다.

Q2 실습을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A 학교(양성기관) → 행정 관리, 실습의뢰서 발급, 협약 체결
담당교수(실습담당교수) → 수업 운영 및 최종 평가
실습기관 지도자(실습지도자) → 현장 지도 및 평가
즉, 학교와 기관, 그리고 학생이 함께 협력해서 진행합니다

Q3 어디서 실습할 수 있나요?

A 실습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에 따른 공인 청소년기관이나 청소년 관련 사회복지기관,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대안학교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Q4 편입생은 선수과목을 다시 들어야 하나요?

A 아니요. 편입 전에 이수한 과목이 학점으로 인정되면,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Q5 실습 중 알게 된 정보를 SNS나 개인 블로그에 써도 되나요?

A 기관 운영 정보, 청소년 개인정보, 내부 프로그램 내용 등은 비밀 유지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나 기밀사항 유출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6 실습기관을 바꿀 수 있나요?

A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학교와 기관이 상호 협의 후 협약 변경 또는 해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07

실습기관 안내





01 양성기관과 협약체결

- ✓ 양성기관 수요조사 참여(요청 시)
- ✓ 양성기관 담당자 면담 진행(요청 시)
- ✓ 실습기관 실습협조 요청 공문 접수
- ✓ 실습기관 참여 가능 기관 여부 확인
- ✓ 실습 참여 여부 검토
- ✓ 실습기관 공문 결과 회신
- ✓ 실습참여 여부 통보(필요 시)
- ✓ 참여 의사가 있을 경우 양성기관과 협약체결

02 실습지도 계획 수립

- ✓ 실습기관 현장실습 운영현황 진단
- ✓ 실습기관 현장실습 프로그램 수정 및 개발
- ✓ 실습지도자 배정

03 실습생 선발 검토

- ✓ 학생 실습기관 참여 요청 접수
- ✓ 학생 작성 필요 서류 등 제공
- ✓ 학생 실습기관 방문 시 면담
- ✓ 실습생 선발 절차 안내 및 면접 등 진행

04 실습생 선발 확정

- ✓ 실습생 선발 여부 논의
- ✓ 신청 학생 실습생 선발 여부 통보

05 실습지도 준비

- ✓ 실습기관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 ✓ 현장실습 유관기관 협조 요청
- ✓ 실습지도자 직무교육 및 실습 지도 준비
- ✓ 실습기관 현장실습 프로그램 확정



01

실습지도
(15일, 130시간 이상)

- ✓ 현장실습 프로그램 안내
- ✓ 실습기관 실습 운영 소개
- ✓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소개
- ✓ 학생 제출 실습계획서 검토
- ✓ 현장실습 프로그램 진행(15일, 130시간 이상)



01

현장실습 평가회 참여

- ✓ 학생 제출 실습일지 검토
- ✓ 학생 제출 결과보고서 검토
- ✓ 실습생 자체 실습 평가 간담회 의견 교류



02

실습기관 실습생 평가 및 제출

- ✓ 실습생 평가서 작성 및 제출
- ✓ 실습기관 현장실습 자체 평가

01 실습기관의 운영 절차(안) (4/4)

지도자 배치

- ✓ 1급 또는 2급(경력 2년 이상) 지도자가 상근해야 함
- ✓ 동일 시간대 지도자 1명당 실습생은 10명을 넘지 않도록 함



자격소지



상근



경력



최대 10명
이하

실습시간

- ✓ 실습일수: 최소 15일, 총 130시간 이상 실시
- ✓ 근로기준: 1일 최소 4h 이상 8h 이하, 1주 40h 준수
- ✓ 연장근로: 1주 최대 5h 한도 가능, 실습생 동의 필요
- ✓ 야간근로: 원칙 불가,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 협의



일수



근로



연장



야간

의무교육 실시

- ✓ 실습 전 안전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함 (협약사항)



실습 전
안전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사고예방

실습기관 [현장] Check!



지도자

자격요건 갖춘
상근 실습지도자 종사 유무?



실습기관

실습기관 자격요건 해당기관 확인?
(고시 제6조)



실습지도

실습운영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130h)



실습인원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생 10명 이내
지도?



Q1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협약해 체결해야 하나요?

A 네.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3조에 따라, 현장실습 시작 전 또는 시작일까지 협약 체결이 필수입니다.
이 협약은 대학(양성기관)과 기관 간의 공식 문서이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실습기간 및 장소	예: 2025.7.1~2025.8.31 / OO청소년수련관
평가 관련 사항	지도자 평가 방식, 성적 반영 절차
보건·위생·안전	산업재해 예방, 응급조치 절차
실습비 등 기타	실습비 지급 여부, 근무조건 등

Q2 야간청소년활동(예: 캠프, 축제)이 있을 경우 실습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교육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이 서면 또는 구두로 동의하에 안전관리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학에도 사전 보고해야 합니다.

Q3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도 있나요?

A 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대학과 기관이 협의하여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학이 성평등가족부 지정 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예: 실습 취소, 일정 변경, 지도자 교체 등)

Q4 실습생의 안전사고나 산업재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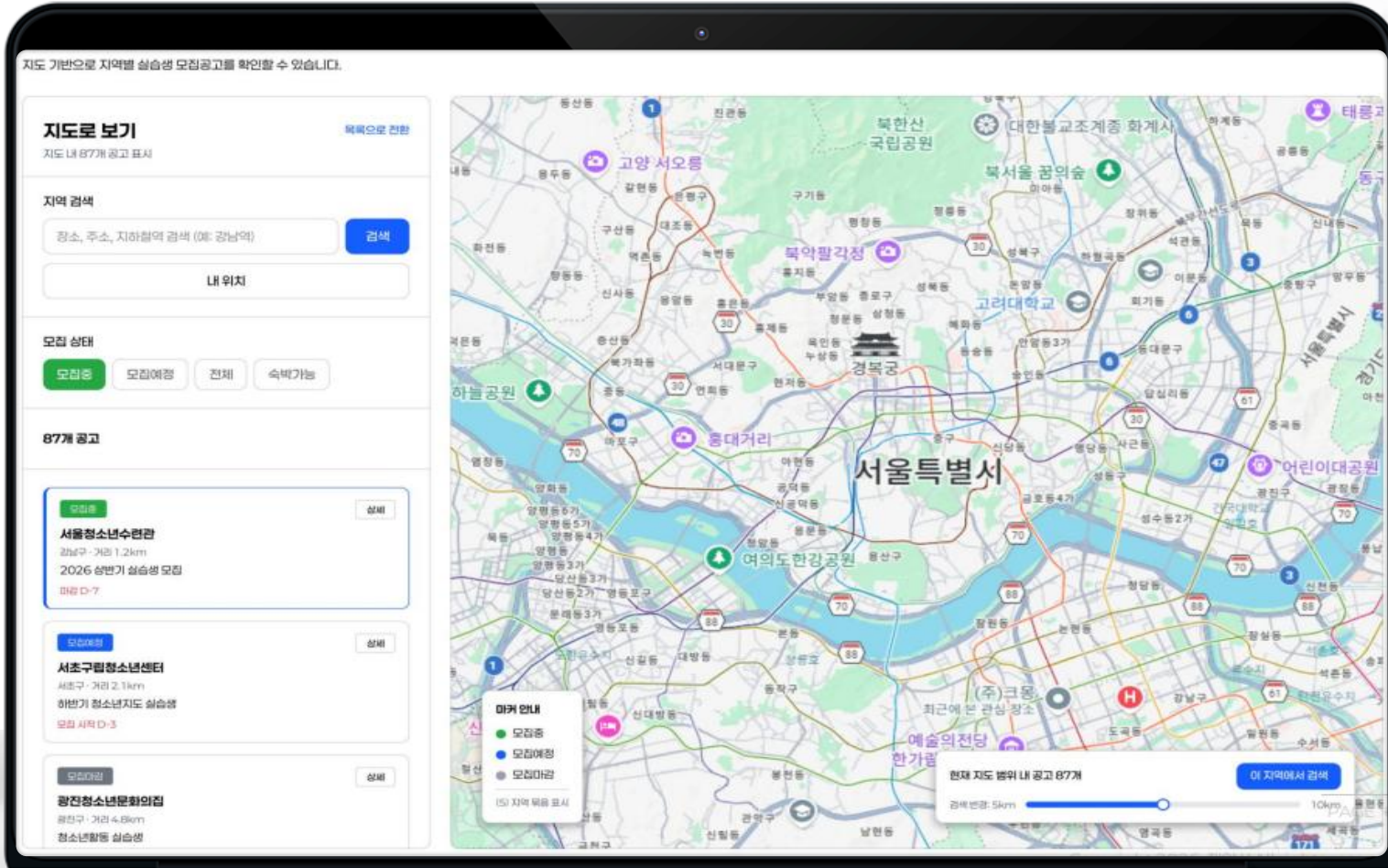
A 협약서에 보건·위생 및 산업재해 예방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대학에 통보하고, 실습기관의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조치해야 합니다.
학생은 대학의 상해보험 또는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08

시스템 안내



01 청소년지도사 통합관리시스템 (1/3)



2026년 12월 오픈 예정

내 주변 실습기관,
지도에서 한눈에!

공고 미리보기

실습생에게 노출될 화면을 미리 확인합니다.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 등록 후에도 수정이 가능하지만, 모집이 시작되면 일부 항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입력 정보 요약

1. 기본정보

광고명: 2026년 상반기 청소년지도사 2급 현장실습생 모집

모집인원: 15명

실습기간: 2026-03-01 ~ 2026-05-30 (90일)

총 실습시수: 130시간

실습비: 300,000원

모집기간: 2026-02-20 09:00 ~ 2026-02-28 18:00

[수정하기](#)

2. 모집 내용

3. 실습 지도자

4. 첨부 파일

실습생 화면 미리보기

[새 창에서 보기](#)

모집 중
마감까지 D-9

○○청소년수련관
서울시 강남구

2026년 상반기 청소년지도사 2급 현장실습생 모집

모집인원	기간	시수	실습비
15명	2026.05.30 ~ 2026.06.30	130시간	300,000원

1. 프로그램 개요
본 실습은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으로, 청소년 활동 전반에 걸친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모집 대상 및 자격요건
청소년학 또는 관련 학과 재학생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 이수자
청소년 활동에 열정과 관심이 있는 자

3. 실습 내용 및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상담 실무, 행정 업무 등 다양한 분야의 실습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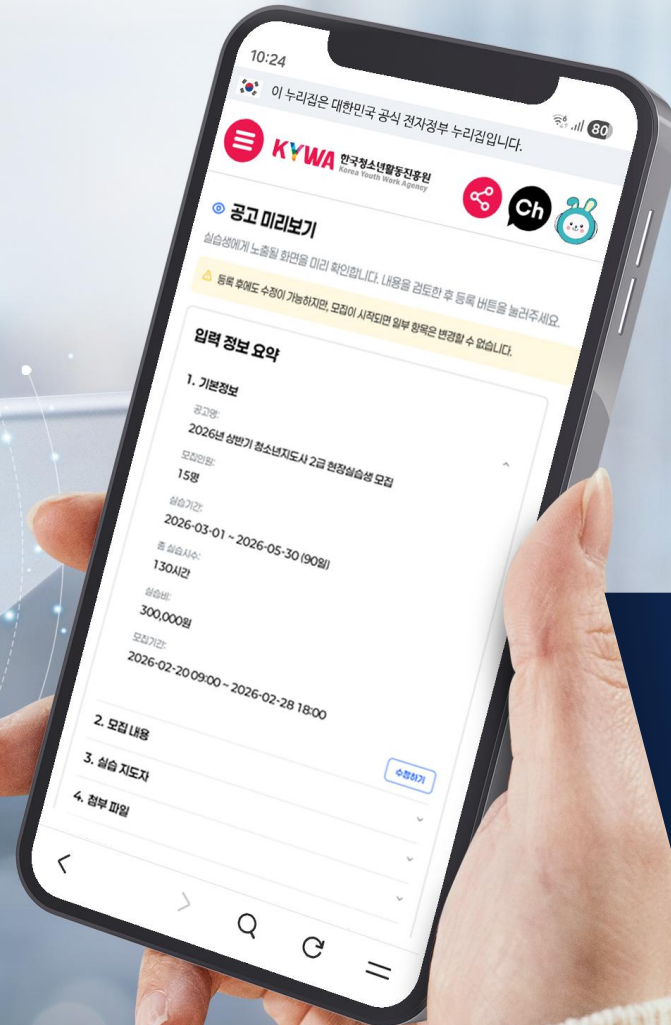
2026년 12월 오픈 예정

*** 실습생 모집공고
간편 등록!**

* 매뉴얼 제공

01 청소년지도사 통합관리시스템 (3/3)

KYWA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6년 12월 오픈 예정

PC,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접속!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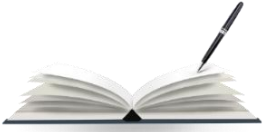


☎ 02-2100-6257



☎ 041-620-7741~4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제도 안내

감사합니다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함양과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 지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

KYWA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